

의안번호	2213100
의 퇴 인	박수현의원
회 답 일	2025. 12. 15.
추 계 번호	25C5211

속기사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숙기사 자격심의위원회)	숙기사 자격의 취득과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숙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둔 1. 숙기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숙기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숙기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숙기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중요사항	의무규정
2	안 제36조(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숙기 제도개선 및 숙기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숙기사회에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숙기사 자격심의위원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6조(지원 등)	

2. 상세 사유

□ 숙기사자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제정안은 숙기사 자격의 취득과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회의준비 비용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7조제2항은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전체수 및 민간위원수를 가 정하여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행 속기사 시험제도는 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 소관 국가기술자격 시험¹⁾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²⁾으로 관리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의 경우 안 제35조(수수료)에 따라 속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시험 응시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속기사 자격시험 위탁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 대한상공회의소 소관 국가기술자격 시험(현행 속기사 자격시험 제도)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서비스분야		
		1급	2급	3급
경영·회계·사무	사무	한글속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속기사회 지원(안 제36조)

- 제정안은 속기사의 품위향상과 속기제도 등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속기사회(이하 “속기사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정관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는 법정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안 제28조)
- 제정안(안 제36조)은 속기 제도개선 및 속기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속기사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예상할 수 있으나, 지원의 내용과 지원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1) 속기사 국가자격제도 연혁

- 1982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한글속기사 자격검정시험 시행
- 1984년 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중

2) 민간자격: (사)한국AI속기사협회 주관, 데이터전문속기(과기부), 수사속기(경찰청) 등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